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5. 12.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당항포관광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맞춤형 정비 등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정비

나. 만 나이 정비 및 관외 이용객 신설

1) ‘만’ 삭제(안 제4조제1호·3·4·5, 안 제8조제1항제4호)

2) 관외 이용객 정의(안 제4조제7호)

다. 입장료 및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정비(안 제5조)

라. 개방시간 및 매표시간에 대하여 정비(안 6조)

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목 변경 및 기념품 지급 부분 추가

(안 제6조의2)

- 도장 찍기, 보물찾기, 가상현실 증강체험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바.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규정 정비·추가(안 제8조)

1)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규정 정비

2) 입장료 경감 규정 추가

가)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전체 입장료의 30퍼센트(4인 이내)

나) 5만원 이상: 전체 입장료의 40퍼센트(4인 이내)

사. 입장요금표 정비(안 별표 1)

1) 주요 관광지 연계 할인(1개월 이내) 및 협의 지자체 주민 삭제

2)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반영

아. 시설이용료 요금 정비(안 별표 2)

1) 제3주차장 이용객 주차료 무료 변경

2) 트램카 이용료 변경

(기존) 트램카 1회 이용권 1,000원, 자유이용권 3,000원

(변경) 트램카 1회 이용권 2,000원, 2회 이용권 3,000원

3) 주제관 내 입체영상관 및 가상현실체험존 이용료 징수

(신규) 입체영상관 2,000원, 가상현실체험존 2,000원

4) 돛형펜션 이용료 변경

(기존) 성수기 110,000원, 비수기 주말 80,000원, 주중 65,000원

(변경) 성수기 80,000원, 비수기 주말 60,000원, 주중 50,000원

5) 카라반 이용료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관광진흥법」 제67조

2)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375호
가) 예고기간: 2023. 3. 10. ~ 3. 30.
-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의 신청자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여행사명 (단체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대표자</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right;">(남/여)</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여행사명 (단체명)		대표자	(남/여)	...				<input type="checkbox"/>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하여 반영코자 함
여행사명 (단체명)		대표자	(남/여)							
...										

- 6)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7)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률”을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3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외 이용객: 고성군 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관외 거주자로 입장 전날 또는 그날 관내에서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이용객

제5조의 제목 “(입장요금)”을 “(입장료 및 입장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관광지를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징수한다.
- ③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 제7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개방시간 등) ① 관광지의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 ② 관광지의 매표시간은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이 개시될 때부터 개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의 제목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을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항포관광지”를 “관광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람 당일까지”를 “관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장 찍기 여행
2. 보물찾기 체험
3. 가상현실 증강 체험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으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1,000원”을 “사람은 입장료를 1천원”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00cc”를 “(1천시시”로, “주차요금”을 “주차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주차요금”을 “주차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한”을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3세 미만의 유아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세대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⑩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외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전체 입장료의 30퍼센트(4인 이내)

2. 5만원 이상: 전체 입장료의 40퍼센트(4인 이내)

⑪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입장요금표 및 별표 2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u>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및 봉동리 일원으로 한다.</u></p>	<p>제2조(위치) <u>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6 일원으로 한다.</u></p>
<p>제3조(적용 범위) <u>관광지의 보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u>조례</u>----- ----- ----- -----.</p>
<p>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어 른</u>: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2호(군인), 제3호(청소년) 이외인 사람</p> <p>2. (생 략)</p> <p>3. <u>청소년</u>: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p> <p>4. <u>어린이</u>: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5. <u>노 인</u>: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p>제4조(용어의 정의) ----- ----- -----.</p> <p>1. ----- <u>19세 이상 64세 이하</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13세 이상 18세 이하</u>----- ----- -----.</p> <p>4. ----- <u>3세 이상 12세 이하</u>----- -----.</p> <p>5. ----- <u>65세 이상</u>----- -----.</p>

6. (생략)

<신설>

제5조(입장요금)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입장료징수 등) ① 입장료
는 관리사무소(직원이 직접 취

6. (현행과 같음)

7. 관외 이용객: 고성군 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관외
거주자로 입장 전날 또는 그
날 관내에서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등에서 일정 금액 이
상 이용한 이용객

제5조(입장료 및 입장료 징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관광지
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징수한
다.

③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 제7조
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다음 날
까지 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
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
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
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개방시간 등) ① 관광지의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급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입장료는 동절기(11. 1.~ 2.28.)에는 09:00부터 17:00까지, 하절기(3.1~10.31)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징수한다. 다만, 관광성수기에는 징수시간을 연장운용할 수 있다.

④ 그날 징수한 입장료, 주차료 및 제7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판매수입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2(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① 당항포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유료

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관광지의 매표시간은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이 개시될 때부터 개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2(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① 관광지 -----

관람객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신 설>

제7조(시설이용료) ①·② (생략)

③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한다.

④ 삭 제

⑤ (생략)

-----.

② -----

----- 관람일까지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장 찍기 여행

2. 보물찾기 체험

3. 가상현실 증강 체험

제7조(시설이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만 3세 미만의 유아
5.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공 등 이용증을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3세 미만의 유아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 소지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그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
7. 고성군이 주최·주관하는 축제·행사시 입장하는 군민 및 참가자(단, 엑스포 행사 기간은 제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10. 20인 이상 단체 인솔자 중 20인당 1인의 인솔자
1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정기간 동안 출입하는 사람
<이동 2013.06.17. 조 2112>

② 군수는 고성군 관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
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1,000원으로 하고 주차료를 징
수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경형자동차(1,000cc
이하)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
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설이용료인 주차요금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17.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
----- 사람은 입장료
를 1천원-----

----- 않는다.

③ -----(1천시시

----- 주차료-----
-----.

④ 다음 각 호-----

----- 주차료-----
-----.

1. 장애인-----

특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소유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 표지(참전고엽제, 5·18민주유공자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

⑤ ~ ⑨ (생략)

<신설>

2. -----
----- 등
등록된 -----

3. -----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외 이용객에 대하여 입장료의

<신 설>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전체 입장료의 30퍼센트(4인 이내)

2. 5만원 이상: 전체 입장료의 40퍼센트(4인 이내)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현행>

입장요금표 (제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보통권	우대권		
개인		7,000	3,500	5,000	4,000
단체 (20인 이상)		6,000	3,000	4,000	3,000
주요 관광지 연계 할인 (1개월 이내)	개인	6,000	3,000	4,000	3,000
	단체 (20인 이상)	5,000	2,000	3,000	2,000
고성군민 (협의 지자체 주민)		1,000	1,000	1,000	1,000
비 고		만18세~64세	만65세 이상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2000.00.00.>

입장요금표 (제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보통권	우대권		
개 인	7,000	3,500	5,000	4,000
단체 (20인 이상)	6,000	3,000	4,000	3,000
고성군민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	1,000	1,000	1,000	1,000
비 고	19세~64세	65세 이상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2] <현행>

○ 시설이용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원)		비 고	
주차료	이륜차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50/100 경감 • 군민 무료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3,000			
	승합차 (16인승 이상)	4,000			
	화물차	4,000			
트램카	이용구분	1회 이용권	자 유 이용권	자유이용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회장 내 횡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어 른	1,000	3,000		
	청 소 년				
	어 린 이				
물놀이 시 설	어 른	5,000			
	청 소 년	4,000			
	어 린 이	3,000			
펜 션 (52.0㎡) 16평형	성수기	1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이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20.~8.25. • 비수기: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비수기	주말	120,000		
		주중	100,000		
돛형펜션 (26.0㎡) 8평형	성수기	110,000			
	비수기	주말	80,000		
		주중	65,000		
카라반	성수기	120,000			
	비수기	주말	100,000		
		주중	80,000		
오토캠핑 장	S사이트	1구간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준: 1구간당/4인 - 1인 추가시마다 이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1박 추가	30,000		
	그 외 사이트	1구간	45,000		
		1박 추가	30,000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2] <개정 2000.00.00.>

○ 시설이용료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원)	비 고	
주차료	이륜차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50/100 경감 무료: 군민, 제3주차장 이용객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3,000		
	승합차 (16인승 이상)	4,000		
	화물차	4,000		
트램카	1회 이용권	2,000		
	2회 이용권	3,000		
주제관	입체영상관	2,000	4D	
	가상현실체험존	2,000	XR	
물놀이 시설	어 른	5,000		
	청 소 년	4,000		
	어 린 이	3,000		
펜션 (52.0제곱미터) 16평형	성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이용료 10,000원 추가 성수기: 7.20.~8.25. 비수기: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비수기	주말		120,000
		주중		100,000
돛형펜션 (26.0제곱미터) 8평형	성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기준: 1구간당/4인 - 1인 추가시마다 이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이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비수기	주말		60,000
		주중		50,000
오토캠핑장	S사이트	1구간	50,000	
		1박 추가	30,000	
	그 외 사이트	1구간	45,000	
		1박 추가	30,000	

[별지 제1호서식] <현행>

<p>고성군 당항포관광지</p> <p style="text-align: center;">입 장 권</p> <p style="text-align: center;">입장료 내역 주차료 내역 합 계: 원</p> <p>일련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입 장 권</p> <p style="text-align: center;">입장료 내역 주차료 내역 합 계 : 원</p> <p style="text-align: center;">일련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회 수 용)</p>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0.00.00.>

[별지 제2호서식] <현행>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제6조의2와 관련)

보상금 신청자

여행사명 (단체명)		대표자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 (FAX :)		

관람객 유치현황

관람일자	관람인원			성 별		인 슬 자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남	여	성 명	연 락 처	

보상금 신청내역

구 분	인원(명)	입장료(원)	보상금지급액(원)	비 고
계				
내 국 인				입장료의 20%이내
외 국 인				입장료의 30%이내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입장료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00.00.>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제6조의2와 관련)

보상금 신청자

여행사명 (단체명)		대표자	(남/여)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 (FAX :)		

관람객 유치현황

관람일자	관람인원			성 별		인 솔 자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남	여	성 명	연 락 처	

보상금 신청내역

구 분	인원(명)	입장료(원)	보상금지급액(원)	비 고
계				
내 국 인				입장료의 20%이내
외 국 인				입장료의 30%이내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입장료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감면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관광지사업소장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타 예방접종지원, 한방첩약 지원으로 하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방첩약 지원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한다.

2.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모가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혼(예비)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다.

4. 다자녀세대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전입세대에게는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 알선·수선·정비비, 지붕개량비, 공공시설이용 우대, 전입축하금, 재산세(주택분)·주민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군내 기업체 근로자가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업체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7. 그 밖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의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